



보도	2023.12.18.(월) 조간	배포	2023.12.15.(금)		
담당부서	금융투자검사1국	책임자	국 장	김진석	(02-3145-7010)
	검사2팀 자산운용감독국	담당자 책임자	<u>팀 장</u> 국 장	<u>이상민</u> 임권순	(02-3145-7035) (02-3145-6700)
	자문·신탁감독팀	담당자	팀 장	송현철	(02-3145-6752)

채권형 랩·신탁 검사 결과 (잠정)

주 요 내 용

- 금융감독원(원장 이복현)은 '23.5월 이후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래·신탁 업무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으며,
 - 검사 결과 랩·신탁 업무처리 관련 위법사항 및 리스크 관리· 내부통제상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(잠정)되었습니다.
- □ 고객 계좌의 손실을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다른 고객의 계좌로 전가하거나, 고객의 투자손실을 증권사 고유자산을 통해 보전해 주는 등 중대 위법 사실이 발견되었으며
 - 랩·신탁 운용 시 **리스크 관리** 및 이상가격 거래 등에 대한 내부 통제를 소홀히 한 부분도 확인되었습니다.
- □ 금융감독원은 금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행위를 **엄정히 조치**하여 래·신탁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.
 - 아울러, 운용상 위법행위로 손실이 발생한 랩·신탁 계좌에 대해서는 금투협회와 증권업계가 협의하여 객관적인 가격 산정 및 적법한 손해배상 절차 등을 통해 화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│. 점검 배경

- □ 채권형 랩어카운트(이하 '랩') 및 특정금전신탁(이하 '신탁')은 증권사가 고객과의 1:1계약을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
 - 다수의 고객자산을 집합 운용하는 펀드와 달리, 개별 고객의 투자 목적과 자금수요를 감안한 단독 운용이 가능하다는 특징 때문에 법인고객의 단기자금 운용수단으로 선호되어 왔습니다.

<참고> 랩·신탁·펀드 비교

구 분	랩어카운트	특정금전신탁	펀드
투자자수	1인	1인	다수
운용방법의 결정주체	위탁자(고객)	위탁자(고객)	자산운용사
운용형태	고객별 (단독운용)	고객별 (단독운용)	집합 (합동운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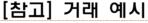
- □ '22년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으로 인해 다수의 법인고객들이 가입 중이던 채권형 랩·신탁의 환매를 요청하였으나, CP 등 편입자산의 시장 매도가 어려워지며 환매가 중단 또는 지연되었고
 - 일부 증권사가 **고객의 투자손실**을 회사의 **고유자산**으로 **보전** 해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**시장 불신**이 확산되었습니다.
- □ 이에 금융감독원(원장 이복현)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, '23년도 검사계획 중 하나로 랩·신탁 관련 불건전 영업관행에 대한 테마검사를 선정·발표하였고
 - 수탁고, 증감 추이, 시장정보 등을 고려하여 총 9개 증권사의
 채권형 랩·신탁 업무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.

Ⅱ. 주요 검사내용 [잠정]

- □ 제3자 이익도모
- 특정 고객의 랩·신탁계좌로 CP 등을 고가 매수 해주는 방식으로 손실을 전가
- ② 사후 이익제공
- 중권사 고유자산을 활용하여 고객 랩·신탁에 편입된 CP 등을 고가 매입하여 원금 및 제시수익률 보장
- ③ 기타 주요 위법시항
- 계약조건을 위배한 운용, 동일 투자자 계좌간 위법 자전거래, OEM펀드 운용 등

1 제3자 이익도모

- □ 랩·신탁 운용시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아니되나,
 - 일부 운용역은 **만기도래 계좌**의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해 **불법 자전** 거래(연계·교체거래)를 통해 고객계좌 간 손익을 이전하였습니다.
 - 예를 들어, A증권사는 '22.7월 이후 다른 증권사와 **총** 6천여회의 연계·교체거래를 통해 특정고객 계좌의 CP를 다른 고객의 계좌로 고가 매도하여 5천억원 규모의 손실을 고객 간 전가하였습니다.
 - ※ 증권사별 손실전가금액은 수백~수천억원 규모





- ① **甲**계좌 **CP**(시가 48.3억원)를 **고가**(49.5억원)로 다른 증권사에 **매도**(⇒ 甲: 1.2억원 이익)
- ② 그 대신 만기 등이 유사한 CP를 乙계좌에서 고가 매수(⇒ 乙 : 1.2억원 손실)
- ③ 동 거래(①-②)를 반복하여 **뿌**은 환매시 **원금**(800억원) 및 목표수익률(3.9%)을 지급받고, **乙**계좌에는 **평가손실 발생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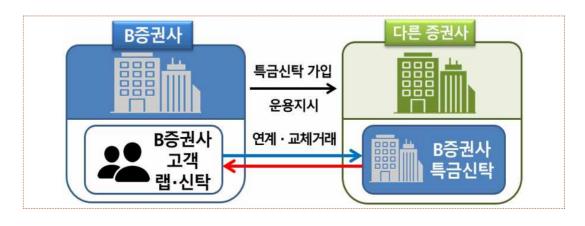
- □ 비정상적인 가격의 거래를 통해 고객에게 손해를 전가한 행위는 판례에 따를 때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는 중대 위법행위에 해당 하므로 주요 혐의사실을 수사당국에 제공할 방침입니다.
 - ※ 관련 혐의자(운용역)는 총 9사, 30명 내외

[참고] 손익전가행위 관련 판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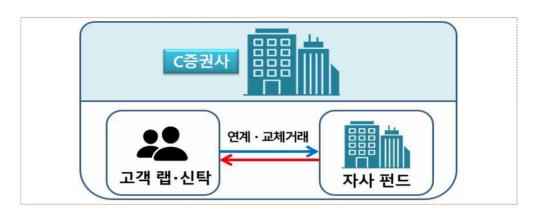
- ① 채권 파킹거래*로 발생한 **손실**을 고객의 **투자일임재산**으로 **전가**한 사례에서 **운용역**의 **업무상 배임**을 인정 (대법원 2017도11612 판결)
 - * 사전약정을 통해 채권을 매수하여 일정 기간 보관 후 다시 매도하는 거래
- ② 자산관리자가 특정 유동화전문회사의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해 본인이 관리하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와 비정상적인 가격의 채권 거래 등을 통해 수익을 이전한 사례에서 업무상 배임을 인정 (대법원 2008도6335 판결)

2 사후 이익제공

- □ 금융투자업자는 원칙적으로 투자자에게 **일정한 이익을 사후 제공** 해서는 아니되나,
 - 일부 증권사는 시장상황 변동으로 랩·신탁 만기 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의 결정 하에 고객 계좌의 CP를 고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제공하였습니다.
 - (사례①) B증권사는 다른 증권사에 가입한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'22.11~12월 중 고객 랩·신탁의 CP 등을 고가매수(연계·교체거래) 해주는 방식으로 총 1,100억원 규모의 이익을 제공



- (사례②) C증권사는 자사에 설정한 펀드를 통해 '22.11~'23.5월 중 고객 랩·신탁의 CP 등을 고가매수(연계·교체거래)해주는 방식으로 총 700억원 규모의 이익을 제공



3 기타 주요 위법행위

- □ (계약조건 위배) 일부 증권사는 고객과의 계약으로 정한 편입자산의 잔존만기, 신용등급 등을 위반하여 랩·신탁을 운용하였습니다.
 - (사례①) D증권사는 고객과의 **랩 계약시** 운용 가능한 자산의 **잔존만기 한도**를 **1년** 으로 제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, **잔존만기**가 **4년**인 회사채를 **편입**하여 운용
 - (사례②) E증권사는 고객과의 **랩 계약시** 운용 가능한 자산의 신용등급을 AA+로 제한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, 신용등급이 AA-인 회사채를 **편입**하여 운용
- □ (동일 투자자 계좌 간 자전거래) 일부 증권사는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해 동일 투자자의 랩 계좌 간 위법 자전거래를 하였습니다.
 - (사례) F증권사는 고객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동일 고객의 1번 랩 계좌의 CP를 2번 랩 계좌에 시가(47억원)보다 고가(49억원)로 매도하여 1번 랩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
- □ (OEM펀드 운용) 일부 증권사는 고객자산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고유자금으로 펀드를 설정하고 특정 채권, CP를 고가매수하도록 요청하는 등 펀드 운용에 관여하였습니다.
 - (사례) G증권사는 고객 신탁 계좌의 환매를 위해 다른 증권사에 채권형 펀드를 설정하고, 해당 펀드의 운용역에게 고객 신탁 계좌의 CP를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해달라고 요청

Ⅲ. 증권업계 및 투자자 당부사항

◈ 올바른 랩·신탁 시장질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증권업계의 개선 노력과 투자자의 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
1 증권업계

- ① (리스크 관리) 고객자산 운용시에도 고유자산 운용에 준하는 충실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.
 - ➡ 랩·신탁 운용 시 편입자산의 **만기 불일치** 및 **시장 상황** 등을 충분히 갂안하여 **리스크**를 **관리**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② (내부통제) 거래가격 등에 대한 내부통제가 강화되어야 합니다.
 - → 시장금리와 괴리되는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이상거래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내부통제가 필요합니다.
- ③ (투자자 자기책임) 랩·신탁 계약체결·운용·환매 과정에서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이 준수되어야 합니다.
 - ➡ 랩·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·운용하고 **환매 시 원금** 및 **수익률을 보장**하는 **잘못된 관행**은 근절되어야 합니다.

2 투자자

- ① (계약체결 시) 랩·신탁은 실적배당상품이므로 증권사에 과도한 목표 수익률 제시를 요구하거나 이를 신뢰해서는 안됩니다.
- ② (운용 시) 투자자는 운용보고서 및 계좌 조회 등을 통해 자산의 내역, 만기 등을 수시로 확인함으로써,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③ (환매 시) 투자손실 보전 또는 목표수익률 보장을 요구하는 행위는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에 반하여 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.*
 - * 손실보전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(대법원 99다30718 판결 등)

Ⅳ. 향후 계획

- □ 금융감독원은 금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행위를 **신속히 조치**하여 **랩·신탁 시장 질서를 확립**하겠습니다.
 - 아울러, 운용상 위법행위로 손실이 발생한 랩·신탁 계좌에 대해서는 금투협회와 증권업계가 협의하여 객관적인 가격 산정 및 적법한 손해배상 절차 등을 통해 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